

■ 기상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> 기상청 기상현상증명발급시스템(minwon.kma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4. 2. 29.>

기상현상증명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 2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(팩스번호/전자우편 주소)	
	주소		
신청사항	기상현상의 종류		기간
	기상요소		
	지점(지역)	지점정보 포함[]	
	용도 및 제출처	발급부수 부	
수수료 감경·면제	해당여부 ☐ 감 경 ☐ 면 제 ☐ 해당없음		
	감경(면제)사유 ※ 「기상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		

「기상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

위탁받은 자()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 감경·면제 대상 증명서류(감경·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아래 참조
------	--	--------------

수수료 납부 방법

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,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비고: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작성방법

- 기상현상의 종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.(예: 종관기상관측, 방재기상관측, 항공기상관측, 기상특보 등)
-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.(예: 일별강수량, 일별평균기온, 일기상통계표, 호우주의보 등)
- 지점(지역)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 또는 지역명을 적습니다.(예: 서울, 강릉, 충주, 서귀포 등)

처리절차

